
정보공개 길라잡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경 영 지 원 실

목 차

I. 정보공개제도 개요	2
II. 정보공개의 절차	4
III. 불복구제절차	10
IV. 비공개 대상정보	11
V. 행정소송 · 심판 재결례	21
〈참고〉	
1. 정보공개 운영지침	25
2. 수수료	37

I. 정보공개제도 개요

1. 정보공개제도의 개념

○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해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거나,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민의 국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

○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 및 공개방법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에 기록된 사항

「공개」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 정보공개청구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
- 사전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없이 자발적 공개

○ 정보공개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인

2. 정보공개 대상기관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각급 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3.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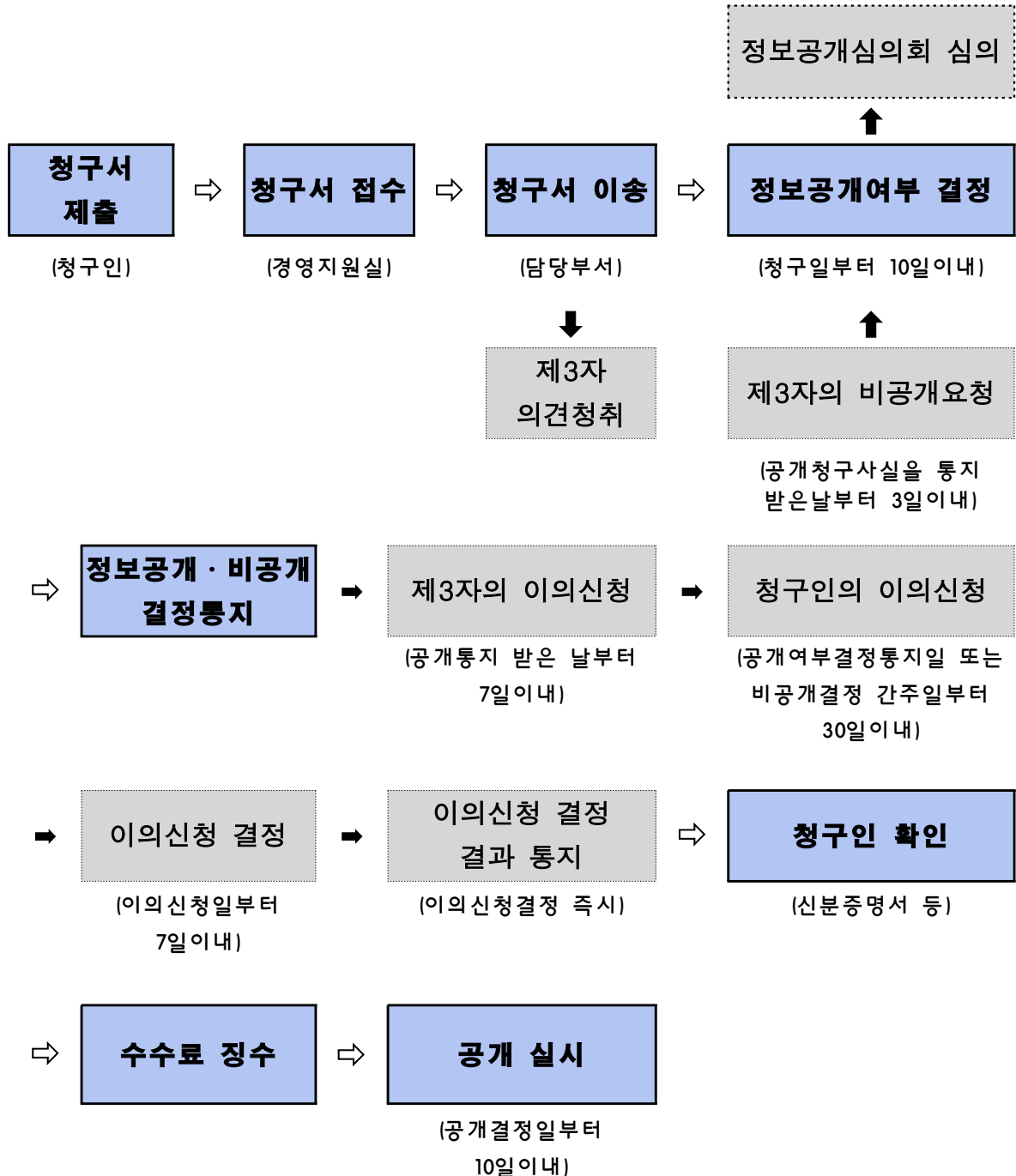
- 국민의 알권리 보장
-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확대
- 정책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 공직의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4. 정보공개 역할 분담

접수처 및 총괄부서 (경영지원실)	정보공개 처리 (각 팀 업무담당자)
•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안내, 자료·관련 서식·정보공개목록 등 제공 • 정보공개청구의 접수·배부, 처리현황 관리 • 정보공개 운영지침 정비 • 운영실태 점검 •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 공개여부 결정 • 불복대응

II. 정보공개의 절차

1. 정보공개 업무처리 흐름도



□ ⇒ : 필수절차 □ ➡ : 임의절차

2. 정보공개의 청구절차

○ 정보공개 청구

청구인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청구방법 : 우편, 팩스, 인터넷, 직접방문 청구 등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 내용, 공개방법
-----	---

- 청구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결재 또는 공람완료 이전의 공식적인 형식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보존기간이 경과되어 폐기된 문서
 - 잡지, 일반서적 또는 다수인에게 판매목적으로 발간된 정보 등

○ 정보공개 처리부서 통보

- 접수된 청구서를 정보공개 담당부서는 (現 경영지원실) 지체없이 청구 정보를 보유 · 관리하는 부서로 정보공개청구서 이송

○ 정보공개여부 결정 · 통지

공개여부 결정/통지	정보(공개 · 비공개 · 부분공개)결정통지서를 지체없이 통지 - 통지내용 · 공개결정 : 공개일시, 장소, 방법 및 수수료 · 비공개결정 : 비공개 근거/사유 및 불복방법/절차 명시
------------	--

- 정보공개여부 결정 · 통지기한 :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

기간연장 사유(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된 경우
-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제3자(이해관계인) 또는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천재지변이나 일시적으로 업무량이 폭주한 경우

※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 제3자에 대한 통지 및 의견청취

제3자 통지	통지여부 결정 - 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으며, 공개 또는 부분공개 대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통지 제3자에 대한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

-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사실 통지
 - 청구된 정보가 비공개 대상일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할 필요 없음
- 제3자의 의견청취
 -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말 것을 기관에 요청할 수 있음

○ 정보의 공개

공개실시	- 공개 방법 ·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 교부 ·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

- 공개 일시의 결정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개 방법의 결정
 -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요청한 방식대로 공개
 - 공개대상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우선 열람 후 필요한 부분에 대해 사본 교부
- 공개일시 경과시의 종결처리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적으로 종결

○ 즉시공개

-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

- 즉시공개 대상정보

- 법령 등에 의해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즉시공개 처리 방법

- 별도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
- 정보공개처리대장 기재, 정보공개수수료 징수는 일반적인 정보 공개청구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

○ 부분 공개

- 공개청구한 정보가 비공개정보와 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법 제14조)

○ 비공개 결정통지

- 비공개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
- 정보 비공개 처분의 근거가 되는 정보공개법 및 개별법령의 조항 조문을 구체적으로 기재

※ 법 제9조 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

<비공개 사유 및 근거의 구체적 제시방법(예시)>

귀하께서 청구하신 정보에는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고 있고, 귀하의 공개청구 취지에 비추어 해당 부분만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함을 알려드립니다.

- 불복절차에 대한 고지
- 정보공개 관련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불복절차를 안내

3. 수수료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정보공개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산정

○ 수수료 감면사유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III. 불복구제절차

1. 이의신청(법 제18조)

이의신청 (청구인)	-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제3자)	-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공개결정에 불복(법 제21조)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신청)
이의신청 처리	- 정보공개심의회 요청 - 심의회의 결정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통해 공개여부 결정(영 제11조 제2항)

○ 처리기간 :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연장기한 :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

(연장사실과 연장사유를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2. 행정심판(법 제19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

3. 행정소송(법 제20조)

행정심판 (청구인·제3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
-------------------	---

IV. 비공개 대상 정보

1. 정보공개 원칙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임
 - 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제도를 운용하여야 함
 - 비공개대상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하여야 함
- 예외적 비공개(법 제9조)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법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

2. 비공개대상 정보의 종류

- 법령상의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정보(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 이유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임

- 비공개 유형

- 명문의 규정으로 공개가 금지되어 있는 사항
- 타 사용목적이 금지되어 있는 사항
- 개별법에 의하여 비밀유지의무가 부과된 사항

○ 안보 · 국방 · 통일 · 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유형

- 대북한관련 정보수집 · 분석자료, 전군지위관회의 회의록(국가안전보장,국방)
- 남북회담 협상대상 수립, 통일관계 장관회의 회의록(통일)
- 비밀외교협정 관계문서, 주재국의 정치정세와 대외정책 조사보고서(외교)
- 에너지 및 지하자원의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전략 수립(통상)

-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재정자금 수불 및 집행계획(재정)
- 전시대비 화폐수급계획, 증권시장관련 정책(금융)
- 을지훈련과 관련된 기본계획, 자체사건계획, 상황보고서, 강평회 보고서 등의 문서, 충무계획과 관련한 각종 문서, 민방위교육훈련 실시결과보고서와 같은 민방위교육 관련 문서, 그리고 예비군에 관한 각종 문건(군사훈련·국가재난훈련)
- 남북경제협력사업관련 법적지원에 대한 의견조회 등에 관한 접수 공문, 검토의견서, 민사·상사관련 북한법제 및 중국법제 등 연구에 있어서 선정연구과제 및 연구관련자료 등(통일관련)
- 대통령·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대통령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 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국가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 위험물의 저장위치
- 보유중인 독극물의 종류
- 생화학테러 대비 기술개발사업 추진전략

○ 국민의 생명 · 신체 ·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비공개 이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수사관계 조회사항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 내용
- 방재, 방법에 방해가 되는 정보
- 연구성과 등에 관한 문서
- 범죄행위, 위법행위, 부정행위 등의 통보자, 참고인(또는 피의자) 명단
- 인감업무 · 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 ·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진행중인 재판 및 범죄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일방예방 및 특별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행정소송·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 처분에 관한 사항

○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감사·감독·검사관련 정보
- 시험의 적정한 실시 또는 판정에 지장을 우려가 있는 정보
- 인허가 등의 규제 관련 정보
- 입찰 관련 정보
- 예결산, 회계 관련 문서
-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인사 관련 정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제5호 관련 법령, 고시 등에 관한 문서
- 직원단체 등(예. 공무원노동조합)과의 교섭을 위한 정보
- 보조금, 용자 관련 정보

○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 이유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유형

- 민감한 정보 :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통장계좌번호, 급여, 학력이나 직업 등 경력, 활동사항, 사상·양심·종교에 관한 정보, 건강상담표나 검사기록을 포함한 병원진료기록 등 개인의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 재산상황(납세증명서), 개인에 관한 평가기록 등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특정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학력, 주민등록번호, 사회경력 등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
-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지방세 심사제도 운영, 지적정보센터 운영, 지적측량 적부심사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등 개인정보

공개가능한 개인정보

-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부동산 등기부등본)
-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심의회 등 위원명부, 수상자 명단)
- 공개하는 것이 공익상 필요한 정보(신체장애자 상담원 명부)
-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확정판결후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 권한행사의 기본방침 및 결과의 기본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

○ 법인의 경영·영업비밀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 이유

법인 등이나 사업을 하는 개인의 경쟁, 사업운영상 또는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영업상 비밀」이란 해당 정보가 영리목적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 「정당한 이익」에 해당되어 비공개가 가능한 사항

- 법인·단체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이 보유하는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 경영방침, 신용, 경리, 인사 등의 사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 등
- 계약체결과정·결과 관련문서
- 최저임금적용제외인가신청서, 차량의 세부제원, 세부도면 또는 부품의 규격 및 하중분포별 분담하중의 산출방법 등이 포함된 형식승인 신청서 등
- 국가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 사단법인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개가능한 법인정보

- 사업활동의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보호관련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자의 각종 행정처분 통지서 등은 공개

○ 부동산투기 ·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법 제9조 제1항 제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 이유

정보의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유형

- 용지매수계약서, 설계단가표
- 각종 부동산 개발계획 등
- 온천원 보호지구 또는 온천공 보호구역의 지정고시 전의 관련 정보
- 물품가격 인상에 관한 정보

V. 행정소송 · 행정심판 재결례

1. 행정소송 판례

법 사건번호(기관)	정보내용/사건쟁점	판결내용
의정부지방법원 2012구합1681 (대한석탄공사)	○○광업소 도급업체의 2012 년 용역 및 도급 설계내역서	○○광업소도급업체의 2012년 용역 및 도급 설계내역서를 비공개한 것에 대하여 청구는 정보는 작업의 작업량, 투입 인원수, 소요 작업비 등의 세부내역과 기업이윤을 고려하여 추정가격을 산정한 자료로 공개된다하여 기업의 사업활동이 부당하게 제약당하는 등의 부이익이 발생한다 보기 어렵기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음<공개>
대법원 2012두2603 (감사원)	자신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 및 감사결과와 관련한 내부 품의서 또는 의견서	직원에 대한 감찰은 민원과 감사의 성격을 동시에 지녀 감사의 속성상 조사결과에 이르기까지 조사내용 이나 의사결정과정 등이 공개된다면 감사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공개될 경우 자신의 진술내용의 공개부담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아 자유롭게 진술하기 어렵고 조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어 감사 종료 후에도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필요가 있음<비공개>

법 사건번호(기관)	정보내용/사건쟁점	판결내용
대구지방법원 2012구단3076 (경북북부제1교도소)	징벌위원회 회의록	징벌위원회 회의록은 징벌절차를 진행한 내용과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 의결한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므로 비공개대상정보 부분을 분리하거나 가리고 복사하여 그 사본을 공개하는 방법으로 공개대상부분만을 공개함으로써 정보공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 중 징벌위원회 위원장과 위원들이 비공개로 심사, 의결한 내용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은 위법<공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39967 (서울시 동작구)	이의신청한 건의 각하 처분에 대해 소를 제기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은 사실상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기존의 결정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에 불과하여 정보공개청구인의 권리, 의무에 새로운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므로 독자적인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소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각하>

2. 행정심판 재결례

사건번호(기관)	정보내용	재결내용
2012-61 대구지방법교청청행심위 (부산구치소)	CCTV영상정보	CCTV 영상정보는 피청구기관의 전자장비 용량부족에 따른 녹화 기록 보존의 한계로 촬영된 시점 부터 10일전·후 자동삭제되는 시스템 이어서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법률상 이익의 확대에 의하여 행정심판 청구의 본인판단을 하건대, CCTV영상정보는 구체적인 물적·인적정보가 노출되어 수용관 리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 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에 의한 비공개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음 <비공개>
2012-0651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한국은행)	2008년~2012년 한국은 행 임직원의 징계현황 - 징계일시,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 징계사유, 징 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징계대상자(직위, 직급, 부서), 징계 사유 및 징계내역(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을 종합하면 징계대 상자가 누구인지 추정할 수 있고 이 러한 사항들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인정되나 징계일시와 같이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분리하여 부분공개해야 함 <부분공개>

사건번호(기관)	정보내용	재결내용
2012-106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 (강원도 삼척시)	한우농가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기각결정한 정보공개 심의회 회의록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과정을 기록한 회의록으로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고, 정보공개심의회는 속성상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위원들간의 자유로운 의견교환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이 공개 될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는 독립적 심의결정에 영향을 미쳐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 한 피청구인의 처분이 위법부당 하다고 할 수 없음<비공개>
2012-09376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경상대학교)	총장업무추진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정보공개법 제9조에 따라 '일자별 상세분류, 목적, 장소' 등의 개략적으로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	업무추진비 사용일자를 세분하지 않은 채 월별 횟수 등을 개략적으로 공개한 것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 취지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 하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반하므로 피청구인의 정보 부분 공개 결정은 위법·부당함<공개>

<참고1>

정보공개 운영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공제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자 지정 및 임무·역할 등) ① 공제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단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공제회의 정보공개업무를 실무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업무담당 부서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각각 지정한다.

②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공개여부 결정 등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보공개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기반 구축
2.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운영
3. 부서별 정보공개 처리현황 점검 등

제2장 정보의 공표 등

제4조(정보의 공표) ① 공제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비치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보완하고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② 공표 대상인 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실시는 당해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에서 수행한다.

제5조(정보공개방) ① 공제회 홈페이지에 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공개방에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공개목록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하여야 한다.

③ 공개방에 문서의 게재는 사전공표 대상정보의 경우는 각 부서에서 수행하고 정보공개목록의 경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부서에서 수행한다.

제6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법 제9조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② 이사장은 법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고 소속 직원이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정보의 공개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별표 1] 에서 정한 기준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제3장 정보목록의 작성 등

제7조(정보목록의 작성)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생산일자·문서제목·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서별로 작성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비치·관리) ①정보목록은 인터넷 홈페이지 정보공개방에

게시한다.

② 각 부서에서는 정보목록을 월 1회 이상 업데이트 하여야 한다.

제4장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제9조(구성) ①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정보공개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으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다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사항)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개청구 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이의신청
3. 그밖에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1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제10조의 심의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결정된 사항은 이를 기록하고 출석위원들이 서명·날인한다.

제12조(시행)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시행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당지급) 공제회의 임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의2(정보공개실무위원회) ① 정보공개 실무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보공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회의 위원장은 정보공개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각 부서장이 추천하는 자로 하며,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실무자로 한다.

③ 실무회는 공개대상 문서목록의 심의 및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위원회에 부칠 사항 등을 사전 심의한다.

제5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5조(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6조(비용부담)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② 이사장은 정보공개에 따른 비용을 경감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7조(비공개) 비공개 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 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정보공개담당 총괄 부서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징계) ① 이사장은 정보공개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거짓 정보공개 및 정보 숨기기를 하였을 때
2. 정보공개 불복절차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 각호에 대한 징계처분은 [별표 2]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

③ 징계종류 및 효력과 징계의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제회의 인사규정 제47조 내지 5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보칙)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정보공개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05. 9.)

(시행일)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30)

(시행일)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비공개 대상정보의 기준

법 제9조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1.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대책과 전략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위·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4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2.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1. 불시 감사조사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사 등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감사 관련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 비위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지시서, 부조리신고센터, 행동강령위반행위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3.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4. 인사(임용, 승진 등)와 관련하여 생산된 문서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인사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5. 내부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투자위원회, 사업개발심의위원회 심의자료 나. 금융거래 및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투자건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다. 진행이 종료된 투자건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라. 리스크관리위원회의 심의내용 및 의결결과, 회의록 등에 관한 정보 마. 리스크 측정결과 및 점검·통제, 성과측정 등에 관한 정보	

법 제9조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1.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이 경우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에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한다.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특정 회원의 집 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정보. 다만, 특정 회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으로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채용(승진)후보자 명부,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등 인사관리과정에서 생산·취득한 임직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임직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다만, 특정 임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산등록의무자의 재산신고 등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제9조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각종 금융거래 및 제안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업체에서 제공한 사업계획, 제안내용 및 협의사항 등 거래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법인·단체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주식, 채권 등 금융거래 내역에 관한 정보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거짓정보공개	정직	감봉	견책
정보숨기기	정직	감봉	견책
정보공개 불복절차 의무불이행	정직	감봉	견책

<별지 제1호서식>

정 보 목 록

생산일자	부서명 및 생산번호	단위업무	제 목	담당자	보존기간	공개여부

※ 기재방법

1. "생산번호"는 해당 문서의 문서번호를 기재합니다.
2. "단위업무"는 그룹웨어 문서함 기록물철등록부상의 기록물철제목을 기재합니다.
3. "보존기간" 항목은 문서분류및보존기간지정규칙 의한 해당 문서의 보존기간을 기재합니다.
4. "공개여부" 항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기재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정 보 공 개 처 리 대 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 구 사 항		결 정 내 용					처 리 사 항		비고
			정보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내용	비공개 (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 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	

※ 기재내용

1. "정보내용" 항목에는 청구인이 공개를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공개형태" 항목에는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청구인이 공개를 요청한 형태를 기재합니다.
3. "결정구분" 항목에는 공개·부분공개·비공개 등 공공기관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4. "공개내용" 항목에는 공개로 결정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5.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항목에는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로 결정한 정보 내용을 기재하고 정보별 비공개(부분공개) 사유를 기재합니다.
6. "공개방법" 항목에는 공개장소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우편 등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한 방법을 기재합니다.
7. "비고" 항목에는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기타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합니다.

<참고2> 수수료(시행규칙 제7조 관련)

공 개 대 상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열 람 -1건(10장 기준)1회: 200원 · 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사본(1장 기준)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열 람 -1건(10장 기준)1회: 200원 · 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사본(중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복 제 -1건(10장 기준)1회: 200원 -10장 초과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도면·카드 등	○열 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사본(1장 기준)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열 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사본(중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복 제 -1건(10장 기준) 1회: 200원 -10장 초과 시 5장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음 테이프 (오디오 자료)	○청 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복 제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청·청취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복 제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녹 화 테이프 (비디오 자료)	○시 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복 제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영 화 필름	○시 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슬 라이드	○시 청 -1컷마다 200원	○복 제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시 청 -1컷마다 200원	-
마 이크로 필름	○열 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사본(출력물: 1장 기준)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복 제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
사 진·사 진 필름	○열 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인화(필름)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복제(필름)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열람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사본(중이출력물) -1컷: 250원 · 1장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복 제 -1건(1MB 기준)1회: 200원 -1MB 초과 시 0.5MB마다 1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